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를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이하 “부실자산등”이라 한다)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실자산등의 인수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는 법인부실채권 등을 구조조정기금에서만 인수하도록 하되,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계를 통해 법인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140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 중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을 “이월이익금”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처벌을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14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1호 중 “연체료율”을 “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로 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